

유럽聯合의 一般特惠關稅 運用방안

李 愚 公
商工資源部 電機工業課長

1. EU의 새로운 GSP 運用計劃

가. 개요

유럽聯合(EU) 執行委는 지난 9월 7일 新GSP 運用계획('95. 1~2004. 12까지 10년간)중 特定物品에 대한 一般特惠關稅(GSP) 中단을 골자로 한 제 1기 運用계획('95. 1~'97. 12)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執行委는 회원국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원국 각국에 그 초안을 송부하였고 동안에 대한 회원국정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향후 2개월내에 앞으로 3년간 적용할 제 1기 運用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 새로운 GSP 運用計劃은 특정품목의 일정한 도에 대해서만 無稅의 혜택을 부여해 온 現行 제도를 수정하여 국가별 한도를 철폐하고, 特惠關稅率의 조정방식을 도입하여 국가별·품목별 졸업제를 실시하며 連繫裝置(Solidarity)제도 및 특별 獎勵제도의 도입, 세이프가드(Safeguard)조항 및 GSP 일시중단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GSP 공여 방식은 전품목을 민감품목, 준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 연합은 一般特惠關稅의 수혜를 국가별로 차등화해 오고 있었으나 그 혜택이 全國家에 공평하게 분배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先開發途上國이 받는 수혜폭을 점차 축소하는 반면에 低開發國에 대하여는 그 수혜폭을 확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環境保護와 社會條項(Social Clause)을 잘 이행하는 국가와 마약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環境과 勞動問題를 무역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다.

나. 주요 내용

유럽聯合의 새로운 一般特惠關稅 運用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特惠關稅率의 조정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EU가 운영해오던 GSP의 품목별 쿼터제 및 실링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GSP 대상품목을 EU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敏感度에 따라 特惠關稅를 차등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감한 것(Sensitive), 조금 민감한 것(Semi Sensitive)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것(Non Sensitive)의 3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95. 1일부터 關稅率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95년 1월부터 적용되는 關稅率은 敏感한 품목에 대하여는 정상關稅의 80%를 적용하고 준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정상關稅의 40%를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종류는 반도체, TV, VCR, 음향기기, 전자렌지 등 주요 전자제품과 자동차 및 부품류, 손목시계류, 피아노, 화공제품류 등이 여기에 속하며 준민감품목(Semi Sensitive Products)의 종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선통신기기, 조명기기, 재봉기기, 시계부품, 기타 약기류 등이며, 비민감품목(Non Sensitive Products)은 완구, 가구, 플라스틱, 타이어, 항공기 및 부품품 등이다.

전자피아노와 전자레인지의 종전에는 GSP 제외 품목에서 민감품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유선통신기기, 조명기기, 재봉기기, 시계부품 및 기타 약기류는 종전의 민감품목에서 준민감품목으로 조정되었고, 완구는 종전의 민감품목에서 비민감품목으로 조정되었다.

둘째 國別·品目別로 一般特惠關稅率의 졸업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EU執行委員會에서는 수혜국의 經濟發展指數(Development Index)와 相對的특화도(Relative Specialization)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先發 開發 途上國이나 新興 開發 途上國 등은 GSP 수혜대상에서 점진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한 品目別, 國別 졸업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91년 World Bank의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國民所得(GNP)이 6천불을 초과하는 선발 開發 途上國에 대하여는 '97년 1월부터 主要品目에 대한 一般特惠關稅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불 이상인 국가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 오만, 브루나이,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인, 리비아, NAURU 등 12개국이다.

본 제도의 주요 내용은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불 이상인 국가의 주요품목에 대하여 '95년에는 품목군에 따라 特惠關稅率을 100% 적용하고 '96년에는 주요품목에 대한 特惠마진을 50% 삭감 즉, 민감품목은 정상 관세율의 90%를, 준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정상 관세율의 70%를,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0%의 稅率을 적용하며, '97

년 1월부터는 정상 관세율을 적용하여 一般特惠關稅 혜택을 주지 않는 즉, 一般特惠關稅혜택 대상에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EU회원국들은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중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GSP 수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자는 國別 졸업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불 미만인 국가의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95년과 '96년에 품목군에 따른 特惠關稅率을 그대로 적용하고, '97년에는 特惠關稅의 마진을 50% 삭감하며, '98년 1월부터는 정상관세를 부과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불 미만인 국가도 '98년부터는 관세혜택을 주지 않고 졸업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동남아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등이 대상이 된다.

셋째 輸入規模의 제한을 위한 連繫補助裝置(Solidarity Mechanism)를 도입한 것으로

이 조항은 品目別, 國別 졸업방식의 보완장치로서 經濟發展 정도에 관계없이 특정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한 유럽연합의 特惠關稅 수혜율이 전체 유럽연합 特惠關稅 공여액의 15~25%를 초과하게 될 때에는 '96년 1월부터 一般特惠關稅 공여를 중단하는 연계보조장치로서, 우리나라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만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중국은 화공제품, 신발, 유리 및 세라믹제품, 칠레는 비료, 브라질은 수송장비류 및 지류가 이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결정되었다.

넷째 特定國家에 대한 特別獎勵制度를 도입한 조항으로

環境保護, 社會條項(Social Clause) 및 人權保障에 충실한 국가에 대하여는 특별 GSP를 공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협약 제87조, 제88조(노동자의 단체교섭권·노조설립) 및 제103조(연소자고용금지)의 기본정신과 국제열대림 보호협약을 國內法에 반영한 국가에 대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공여하게 되는데 품목별 인센티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2개 기준을 모두다 충족시킬 경우
 - 졸업대상품목은 30%의 關稅이하 혜택을 받게 되고
 - 민감품목은 50%의 관세이하 혜택을,
 - 준민감품목은 90%의 關稅이하 혜택을 받게 되며
- 1개 기준만 충족시킬 경우
 - 졸업대상품목은 20%의 關稅이하 혜택을 받게 되고
 - 민감품목은 40%의 관세이하 혜택을,
 - 준민감품목은 80%의 관세이하를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각 輸出國家가 유럽聯合에 文書로서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국은 유럽聯合으로부터 國際基準의 이행과 品目別로 Product-Certificate를 받아야만 한다.

이 특별장려제도는 '97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環境保護條項은 오존층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을 잘 준수하는 국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열대림(Tropical Wood)에만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社會條項은 국제노동기구 헌장을 준수하는 국가에 적용하고 또 마약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 6개국에 대하여는 특별히 一般特惠關稅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先發 開發途上國으로 분류되어 인센티브 공여대상 國家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섯째 自國商品의 保護 및 부당輸出에 대하여는 一般特惠關稅 공여를 중단하는 조항으로

세이프가드는 一般特惠關稅의 수혜를 받아 수입되는 特定製品의 輸入이 급증하여 유럽聯合 내에서 유사製品이 난무하거나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EU회원국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EU執行委員會의 자체 발의로서 언제라도 그 特定製品에 대하여 정상관세를 부과(GSP공여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執行委員會가 EU역내의 産業에 대한 피해사태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역내 생산업자의 시장점유율 감소정도, 생산감소, 재고증가, 설비감축, 수익성 감소 및 파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EU執行委는 조사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공여중단을 결정하고 關聯國家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원국은 執行委의 결정후 1주내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理事會는 다수결로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般特惠關稅의 중단은 輸出業體가 위장수출을 하거나, 당국의 협조요청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무역을 하거나 또는 EU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하는 경우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죄수를 노동시키거나, 마약을 밀매하거나 또는 UR협정상의 시장접근 의무조항을 불이행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一般特惠關稅의 적용을 부분적,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이 一般特惠關稅의 중단절차는 EU執行委員會 또는 회원국의 요청(제소)에 따라 조사를 한후 이해관계인들의 증언을 듣는 등 所定の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대 EU GSP 졸업대상 품목

EU 執行委員會의 이 提案이 채택되면 우리나라는 '95~'96년 2년간은 현행 GSP 제도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97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품목이 졸업제도에 의하여 一般特惠關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聯合의 一般特惠關稅 졸업대상 品目은 각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계류, 철강, 의류, 신발류, TV, VCR, 완구, 가구류, 플라스틱류, 고무류, 가죽류, 모피류, 실크 섬유류, 여행용품 그리고 일부 電氣機械類 등이 졸업대상 品目に 해당되고 있으며(별첨 1, 2 및 3 참조), 우리나라와 경쟁국가인 싱가포르, 전자 및

기계제품이 동 대상품목에 해당되어 있으며, 말레이지아는 의류, 목재, 플라스틱 및 고무류 제품이 또 멕시코는 철강제품이 그리고 중국은 의류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당수의 품목이 '98년 1월부터 졸업대상 품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賞品이 대량으로 EU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一般特惠關稅의 수혜를 최대한 줄이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3. EU회원국의 반응

EU執行委員會가 지난 9월 7일 신규로 GSP 運用規定案을 채택하여 이 안을 EU회원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동 회원국들은 졸업방식 중

品目別, 國別 졸업방식에 대하여 아주 강한 회의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회원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에 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특정품목에 대한 一般特惠關稅 공여를 중단하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6천ECU에 달하는 국가들을 一般特惠關稅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一般特惠關稅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서 지난 '91년 포르투갈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인 6천ECU(약 U\$ 7,800)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 중 현재까지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거론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6천ECU로 결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一般特惠關稅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참고 受惠品目 및 品目別 受惠關稅率

제85류 전기·전자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1994년 9월 현재

品目番號 (CN code)	品名	受惠區分		關稅率		備考	品目番號 (CN code)	品名	受惠區分		關稅率		備考
		現行	改正	現行	受惠				現行	受惠			
85류(1)	전기·전자기기 및 부분품						8526	-레이더 등 무선전파기	非	準	無稅	無稅	
8504	-변압기/정류기	非	準	無稅	無稅		8527	-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敏	敏	無稅	無稅	
8505	-전자석 및 가공품	非	準	4.4	1.8		8528	-텔레비전수상기	敏	敏	14.0	11.2	
8509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기 자강품에 한함)	非	敏	4.0~5.1	3.2~4.8		8529	-8525-8528류의 부품	敏	敏	無稅	無稅	
8516 50 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敏	非	5.1	無稅		8531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기기	非	敏	無稅	無稅	
8517	-유선통신기기	非	準	4.6~7.5	1.8~3.0		8532	* 축전기	敏	準	4.9~7.2	1.9~2.9	
8518	-마이크로폰/음향증폭기	非	準	無稅	無稅	卒業('97)	85류(3)	전자·전자기기 및 부분품					卒業('97)
8519	-턴테이블 등 음성재생기기	敏	敏	9.5	7.6		8533	-전기저항기	非	準	5.3	2.1	
8520	-녹음기 및 기타 음성기록기	敏	敏	無稅	無稅		8534	-인쇄회로	非	準	6.2	2.5	
8521	-VTR 등 영상기록용 재생기	敏	敏	無稅	無稅		8536	-전기회로 개폐기/제진기	非	準	4.6	1.8	
85류(2)	전기·전자기기 및 부분품						8539	*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 전램프	敏	非	4.9~6.0	無稅	
8522	-음향기기 및 VTR 등의 부품	非	敏	無稅	無稅		8540	-TV브라운관 및 부분품	敏	敏	4.9~15.0	3.9~12.0	
8523	-A/V-Tape/마그네틱디 스크	敏	敏	4.9	1.9		8541	-원자로 및 관련기기	敏	敏	4.6~14.0	3.7~11.2	
8524	-음반/CD-ROM 등 기록 매체	敏	敏	4.9~5.1	3.9~4.0		8542	-TR 및 반도체 장치	敏	敏	5.8~14.0	4.6~11.2	
8525	-무선통신기기	非	準	無稅	無稅			* 以上에서 별도로 언급되 지 않은 85類의 其他 全 製品	-	非	-	無稅	